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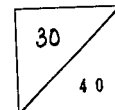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37	14	1994. 6. 16.	홍재 김 명 호

의안 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 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을 붙임과 같이 제정한다.

제의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1조 및 제65조

제의취지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및
어음할인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금리 표지어음제도를 도입하고자
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한 것을 재의함



< 참고사항 >

제외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- ① (생 략)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 략)

한국은행법 제65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< 붙임 >

「금융기관 표지어음 발행의 이율 및 부대조건」 (안)

1. 발행경식 : 각 금융기관이 할인·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(이하 "원어음"이라 한다)을 준할 또는 통합한 표지어음을 할인식으로 발행
2. 최고이율 :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
3. 만 기 : 원어음의 잔여만기 이내에서 60일이상 180일 이내(중도환매 불가)
다만 잔여만기가 60일이상인 수개의 원어음을 통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서 각 원어음의 잔여만기중 최장만기 이내
4. 최저발행금액 : 2천만원
5. 금융기관별 발행한도 : 전월중 평균 어음할인순잔액(전월 10일, 20일 및 말일 기준 할인액에서 일반대출액을 차감한 잔액의 평균치)의 30%이내
6. 실시일자 : 1994. 7. 18.